

2025년(24년실적)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(응급처치·심폐소생술 등 실습 2시간, 이론2시간 총 4시간 안전교육)

<작성요령>

- (작성근거) 어린이안전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9조(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)
- (작성대상)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 중 어린이집
- (수료인원) 이론교육(2H), 실습교육(2H) 총 4시간을 수료한 자로 하며,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
 - * 어린이안전법 외 응급의료법, 119법,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도 인정(그외 인정불가)
 - * 수료증 등 증빙자료는 대상시설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후 지자체에서 보관(행안부 제출 불요, 필요시 증빙자료 확인요청할 수 있음)
 - * 수료인원 집계와 일치하도록 작성(일지할 경우 자동계산됨)
- (이수경로) 수료인원(한국보육진흥원), 지자체(소방서, 보건소 등), 전문기관(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), 기타
 - * 정부지원(한국보육진흥원), 지자체(소방서, 보건소 등), 전문기관(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), 기타
 - * 전문기관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경우 비교란에 교육기관명 기재

연번	시설명	관리주체	주소(읍면동)	수료인원(명)					이수경로(명)					비고
				합계	어린이안전법	응급의료법	119법	학교보건법	합계	정부지원	지자체	전문기관	기타	
1	○○어린이집(예시)	홍길동	모로동 (소재지 등만 기재)	8	5	1	1	1	8	2	3	3	0	
	새싹어린이집	이은숙	원평동	5	5				5			5		

※ 노란색 셀 작성 / 수료인원(합) = 이수경로(합) = 수료증 제출 인원
 ○ 교육 대상 : 어린이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집 교사(담당교사), 어린이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경우
 ※ 제외 대상 : 조리사, 운전기사, 사무원, 및 원장(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, 교사겸직을 안하는 경우
 ※ 누리교사, 보조교사, 연장보육교사, 야간연장교사 : 안전교육을 받은 종사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교육 실시)